

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폐지조례안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2년 5월 12일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2년 5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1992년 5월 26일

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방위과장 심재산)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○ 조례 근거 법규인 소방법 개정

- 근거 : 소방법 법률 개정 (법률 제 4419, 91.12.14)

- 개정 : 소방법 제86조 2항 (의용소방대 설치)

- 내용 : 의용소방대는 그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, 명칭, 구역, 조직, 정원, 임면, 훈련, 검열, 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의원명	주요요지
없	음

나. 반대토론

의원명	주요요지
없	음

5. 수정안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없 음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(의원 만장 일치)

7. 소수의견

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9. 체계 자구 심사 내용

없 음

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2. 5. 1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2. 5. 13

라. 상정일자 : 1992. 5. 26

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방위과장 심재산)

3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광역 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종전 시·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용소방대 자녀 학자금 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폐지

- 경기도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- 경기도 자치법규 공포

- 공포일자 : '92. 1. 14

- 번 호 : 조례 제2232호

- 조례명칭 :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-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공포

-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종전 시·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제정 공포

- 조례명칭 :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(조례 제2231호)

- 공 포 일 : '92. 1. 14

- 시 행 일 : '92. 1. 1

- 내 용 : 명칭, 조직 및 정원, 임